

# OECD 국가의 뇌물방지 협약(Anti-Bribery Convention, 賂物防止協約) 이행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 흥 주\*\*

황 광 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 국제 반부패 협약인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어떠한 경제·제도, 정치, 사회적 조건에서 결정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국가마다 뇌물방지협약을 이행수준의 중요한 결정요인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경제·제도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으로 변수를 선정하였으며 순서형 로짓(ordered logit)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제·제도적 요인으로는 국가 간 무역규모(해외, 국내)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 역시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여성 정치가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제도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가설의 기각 여부에 따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국제 반부패, OECD 뇌물방지협약, 협약이행

## I. 서론

인류역사에 있어서 부패는 가장 오래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부패의 문제는 이전부터 국내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고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패의 정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개념적 정의가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박석범, 2004; 김흥주, 2013c). 이러한 부패행위의 주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취급되어 졌으며 행위 양태로서 횡령, 사기, 뇌물, 불법정치 헌금, 정실주의, 내부자 거래 등 다양한 모습을 띠나, 가장 보편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5336).

\*\* 제1저자

\*\*\* 교신저자

적인 현상이 뇌물수수 등이 논의 되어졌다. 부패문제가 논의된 시초는 미국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써 1970년대 초중반에 발생한 미국의 워터게이트(Watergate) 도청사건과 록히드(Lockheed bribery scandals) 사건을 계기로 반부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정재화, 2000).<sup>1)</sup> 그 이후 미국은 외국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행해진 당해 외국 정부 인사에 대한 금전이나 금품의 공여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카터 행정부 때인 1977년 외국에서 뇌물을 준 미국기업을 처벌하는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을 제정하였다(고준성, 1996). 이로 인하여 미국은 국제상거래 활동에서 자국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자국기업에게 중죄로 처벌하게 되는 특별법을 가진 최초의 국가였으나 미국기업들은 해외부패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외국기업들과의 국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다(장진희·조은경, 2012).<sup>2)</sup> 그리고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패척결의 움직임은 역시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1978년 UN 국제기업위원회(UNCTC)의 국제기업에 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입안 작업과 결부되어 진행되어 왔는데, 총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동 행동규범에서는 국제기업은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2개조의 조문이 명시되었다(Folsom, RH & Michael W. Gordon, 1995).<sup>3)</sup>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차원에서 1995년 12월 유럽 연합국가의 재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뇌물공여를 형사상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EU 및 회원국 공무원에 대한 능동적 뇌물공여행위 또는 수동적 뇌물수수행위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EU의 재정적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유럽에서 반부패운동을 전개하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정재화, 2000).

이와 같이 미국의 노력을 시작으로 국제무역에서의 뇌물 주고받기가 국제무역과 국가 간의

- 1) 이로 인하여 재선에 성공한 닉슨대통령이 임기 중 해야해야만 했던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과 1970년대 중반에 발생한 록히드(Lockheed)항공사에 의한 일본 및 네덜란드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국은 자국기업들의 해외사업에서 외국의 공직자들에게 뇌물공여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2) 미국정부는 이러한 견해에 따라 차후 1977년 법을 다소 완화하여 개정하였으며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으로 제정하였으며(하명신·김종철, 1998) 다른 국가에 해외 뇌물공여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계속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OECD 산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서 해외뇌물공여방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CIME산하에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구성되었고 1994년 5월 15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OECD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채택되면서 OECD 차원의 본격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실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1997년 12월17일 체결되었다(안상욱, 2012a).
- 3) 국제사회에 있어서 UN을 중심으로 한 부패방지의 초기 노력은 1976년 UN 총회에서 초국가적 뇌물공여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다자간 결의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금품제공행위 관행을 비난하는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에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Vogelson, 1996).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만든 초안에서는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불법적인 금품제공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초안으로 머물렀고, 그 후 UN다국적기업행동준칙(United Nation 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에서 기업들의 뇌물공여를 자제하고 금품제공에 대한 기록보존(record keeping)을 제안하였으나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김홍주, 2013c).

투자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선진국을 포함한 OECD국가들 역시 국제무역에서의 부패척결을 공동의 목표로 삼게 되었으며 뇌물방지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통한 협상과정을 거쳐 1997년 12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김준기, 1997).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라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국제적 협약은 각국에 있어서 통일된 규정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협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OECD 뇌물방지협약은 비교적 이행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협약이행에 대한 당사국간 규제가 강한 규범이다.<sup>4)</sup> 이러한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은 동료국가들에 의해 평가되고 공개되고 있으며 실제 해외 각국의 법치주의 현실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개인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평가는 심사제도와 함께 동료압력을 통하여 각 참여국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협약의 이행평가는 자기평가와 상호평가로 구분되고 있으며, 자기평가는 협약과 이행 권고에 대한 질문에 자기평가의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제출 하는 것을 한다. 그리고 상호평가는 당사국마다 2개의 당사국이 주 심사국이 되며 그중에서 주 심사국은 뇌물방지작업반과 함께 국가의 협약 이행을 심사하는 방식의 동료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박석범, 2004).<sup>5)</sup> 따라서 최종보고서에는 심사대상 국가의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당사국의 견해 그리고 이와 함께 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심사제도와 동료의 압력의 효력은 최종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수검회의에서 발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협약의 이행 평가는 개인

4)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구속력이 약한 국제 협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동 협약이 다른 국제협약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강한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협약 가입국은 예외 없이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비준해야 하는 한편,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단계적 이행평가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이행 평가가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연합 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Anti-Corruption Convention)」에 비해 실효성을 갖는다(장진희·조은경, 2012).

5)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당사국마다 2개의 당사국이 주심사국이 된다. 주심사국은 뇌물방지 작업반과 함께 해당 국가의 협약 이행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는 당사국 정부가 제출한 문서를 기본으로 하는 서류심사와 당사국에 방문하여 관련기관의 담당자를 면담하며 심사하는 실사(on-site visit)의 두 단계를 거친다. 주심사국은 심사 결과 보고서를 회원국 전체에 내부 회람한 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평가를 통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한다. 최종보고서에는 심사대상 국가의 이행에 대한 평가와 미 이행 사항에 대한 당사국의 견해, 협약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포함된다. 심사제도와 동료압력의 효력은 최종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체 수검회의에서 발휘된다. 주심사국과 뇌물방지 작업반에서 실사 등을 통해 작성한 중간보고서의 내부 회람을 마친 후 열리는 전체 수검회의는, 수검국과 협약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여 심사대상 국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내리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최종보고서 채택 시 수검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고서에는 포함되지만 보고서 채택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같이 채택된 보고서는 OECD 정식 간행물로 출판되며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이 과정에서 회원국 간 제도개선이나 이행을 위한 직·간접적인 동료 압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수검국은 1년 내에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채택한 조치 등에 관해 작업반에 보고(구두보고)하여야 하며, 2년 내에 이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박석범, 2004).

과 기업에 대한 대응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협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진행 절차와 이행상황에 대한 이해, 대응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장진희·조은경, 2012). 일반적으로 협약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그 현재까지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논의되는 연구는 협약의 배경인 반부패라운드와 협약의 중심에 관한 연구(김중범, 1997; 권은경·신동춘, 1998; 이상용, 1998; 장근호, 1999; 신동화, 1999; 조은경·장근호, 2000 등), 협약의 이행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김희철, 2000; 박지현, 2001; 김준기, 2003; 장준오, 2002; 박석범, 2004; 성문업, 2004 등), 미국 등 다른 나라의 부패관행법과 협약과의 비교연구(오규진, 2011; 윤충원, 2011)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이 국내에서 발효 된지 10년이 넘었으나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협약의 이행 후속조치 및 국내 이행의 평가 뿐 아니라 국가 간의 협약이행의 성과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하고도 왜 이행수준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을 통하여 경제·제도·정치·사회적 요인이 국가 별 이행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는데 있다. 따라서 실증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2008년-2012년 동안 33개의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을 살펴보았으며 이행수준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 검토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수준의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Stata 11.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추정방법은 순서형(Ordered logit)분석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행수준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반부패 논의의 법제와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OECD 뇌물방지 협약의 배경

1970년대 초·중반에 미국에서 발생한 워터게이트 도청사건과 록히드 사건을 계기로 반부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 미국은 1977년「해외부패관행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 지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자국법에 의해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이다. 해외부패관행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보았을 때 매우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으로 미국기업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가 해외부패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외국기업들과의 국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자 이에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교역상대국들에게 뇌물공여행위를 근절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미국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공정한 경쟁의 원칙’ 마련하게 되었다(조은경, 2003).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규범화의 논의에 있어서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해외부패방지에 관한 국내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미국은 개별 국가를

설득하는 전략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협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외부패방지법의 확산전략을 바꾸었다(안상욱, 2012a; 안상욱, 2012b).

미국의 노력으로 1994년 OECD 이사회 권고에 따라,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산하에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은 OECD 회원국들의 국내·국제적 차원에 뇌물공여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외국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뇌물행위와 관련된 각국의 법률 규정과 함께 그 규정의 이행상황에 대한 회원국의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이후 1995년 6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관한 권고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1996년 5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1996년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금처리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고, 1997년 5월에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1994년의 이사회 권고를 보다 구체화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sup>6)</sup>가 채택(안상욱, 2012a) 되었으며, 1997년 12월 17일 동 협약의 서명과 각료선언이 채택된다(조은경, 2003).

OECD는 또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의 국내이행과 뇌물방지협약 추진에 대하여 1998년 4월 1일까지 OECD 회원국은 OECD 뇌물방지 작업반에서 합의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이행입법안을 제출하고, 1998년 12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도록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 협상을 개시하여 1997년 12월까지 협약을 제정하고, 1998년 말까지 공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7년 11월 협상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1997년 12월 17일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포함한 총34개 국가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대항하는 협약(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고, 이후 1999년 2월 15일 12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동 협약이 공식 발효되었다. 현재 40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2월 28일 이행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게 되었다(장진희·조은경, 2012). 다음 <표 1>는 뇌물방지협약제정의 경과 및 그 주요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경과 및 그 주요 내용

과정	주요 내용
1997년 5월 OECD 각료이사회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 5. 15: OECD이사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권고」채택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li> <li>※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억제하는 최초의 국제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4. 10.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nti-Bribery)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산하에 설치</li> </ul>

6) 개정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공무원에 공여된 뇌물의 비용처리 금지’, ‘외국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처벌 위한 공통기준합의’, ‘기업회계기준 및 부패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국내 정부조달 시 입찰 제한’ 등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 4. 11: OECD 이사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손금처리에 관한 권고」 채택</li> <li>• 1996. 5월: OECD 각료이사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형사처벌 하는데 원칙적 합의</li> </ul>
1997년 5월OECD 각료이사회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94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 권고」를 보다 구체화하여 시행하는 「개정 뇌물방지권고」를 채택</li> </ul> <p>&lt;주요내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공무원에 공여된 뇌물의 손금(비용)처리 금지</li> <li>-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공통기준 (common elements) 합의</li> <li>- 기업회계기준 및 부패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li> <li>-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국내 정부조달시 입찰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개정권고의 국내이행과 뇌물방지협약 추진에 대하여 합의 도출</li> <li>- 1998. 4. 1까지 각 국은 OECD 뇌물방지작업단에서 기합의된 형사처벌기준에 따라 이행입법안을 제출하고 1998. 12월까지 입법완료(권고)</li> <li>-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여 1997. 12월까지 협약을 제정하고, 1998년 말까지 발효시키도록 함(결정)</li> </ul>
협약 확정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 7. 7 - 9. 제1차 협약제정 협상회의 개최(OECD 본부)</li> <li>- 28개 OECD 회원국 및 브라질,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슬로바키아가 비회원국으로 참가</li> <li>• 1997. 10. 6 - 10. 제2차 협약제정 협상회의 개최(OECD 본부)</li> <li>- 일부 쟁점사항 외에는 대부분 이슈에 대해 합의도출</li> <li>• 1997. 11. 18 - 20. 제3차 회의 개최(OECD 본부), 협약문 및 Commentary 확정</li> <li>• 1997. 12. 17. 각료급회의에서 서명</li> <li>- 동 협약 및 이행법안을 1998. 4. 1까지 의회에 제출키로 하는 각료선언 채택</li> </ul>

자료: 안상욱(2012a: 151) 재인용.

## 2. OECD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이행입법 발효현황

### 1) OECD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 내용

OECD 각료 이사회는 1997년 12월 17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방지협약」을 제정하였다(박지현, 2001). 협약의 핵심골자는 국제상거래에 외국의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그러한 의사표시 또는 뇌물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을 유의해야 하며 협약의 비준일부터 각 참여국들은 국제적인 계약 등 상 거래에서 협약의 위반에 대한 제제조치를 받게 된다(이진호, 2011).<sup>7)</sup>

협약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과 17개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크게 범죄의 구성요건 및 처벌, 관할권, 감시 및 후속조치, 협약이행 발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제1조는 뇌

7)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논의는 협약문, 후속 및 이행조치, 이와 관련된 보완조치 등 세 부분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 협약문은 전문, 조문 그리고 주석으로 되어 있다. 전문은 부패로 인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뇌물방지협약의 기본 정신과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17개의 개별조항으로 구성된 조문에서는 협약의 실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석은 협약의 해석을 안내·보충하기 위한 조항별 주석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주석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더라도 협정문의 해석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협정에 따른 각국의 국내입법과 법 이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장진희·조은경, 2012).

물죄의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는 외국의 공무원 뇌물수수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규정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는 제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그 처벌 규정으로 뇌물을 주고 얻은 모든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제4조는 재판관할권 조항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에 기초를 둔 관할권을 모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가 자국 내에서 일부 혹은 전부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당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여러 개 국가가 동시에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때, 어떤 경우가 기소권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가를 논의한 뒤에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협약의 제5조와 제6조는 각각 이행 및 공소시효 조항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5조는 법의 집행, 제6조는 조사와 기소에 대한 기간의 제한이 주를 이룬다.

제7조와 제8조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의 처벌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들이다. 제7조에서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자금세탁의 전제범죄로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자국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를 돈세탁방지법의 전제범죄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뇌물죄를 돈세탁방지법의 전제범죄로 규정한 국가에서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죄도 돈세탁방지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는 뇌물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대한 회계를 규정하고,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효과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의 강화와 회계기록의 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회계 장부 밖의 거래나 위장지출, 신분 미확인 거래 등 금지)를 위한 회계장부 유지, 거래의 기록보관, 감사의 기준마련 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국제적인 협조와 관련된 조항들이다. 제9조는 형사사범 공조에 관한 규정으로 각국은 상대국이 뇌물방지협약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형법적 절차를 요구할 때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형사사범공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범죄인 인도, 제11조는 사범공조, 법인인도 및 관할권 분쟁과 관련하여 청구 역할을 담당할 부처를 OECD 사무국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제12조는 OECD뇌물방지협약에 대한 감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부터 17조는 OECD뇌물방지협약의 발효관련 조항과 개정 및 탈퇴 조항이다. 그중 제13조와 14조는 통상적인 서명 및 비준조항이다. 제15조는 협정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효된 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표 2>에서 주요 조문별 내용을 요약하였다.

<표 2> OECD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협약의 주요 내용

제1조(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범죄)	
뇌물범죄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거 죄) 정의 및 구성요건	[제1조 제1항] 국제상거래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 이익을 제의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행위 [제1조 제2항]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교사 권유 방조하는 등의 공모 승인행위 [제1조 제4항 다]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범위와 무관하게 당해 지위를 이용하는 것
외국공무원 의 범위	[제1조 제4항 가] 선출직 또는 임명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법 상의 직위를 보유하는 자,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공적 국제기구의 직원 또는 대리인.

제2조 (법인의 책임) / 제3조 (처벌)	
제재조치 (처벌)	[제3조 제1항]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벌로 처벌. 국내 증리죄의 법정형에 상응. 충분한 자유형 포함 [제3조 제3항/4항] 뇌물수익에 상응하는 압수·몰수·벌금의 부과. 추가적인 민사적·행정적 제재 부과
법인의 책임 및 의무	[제2조]/[제3조 제2항] 당사국은 자국법 원칙에 따라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 마련할 것, 당사국의 법체계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불가시, 금전적 제재 등 비형사적 제재 부과
제4조 (관할권) / 제5조 (시행) / 제6조 (시효)	
제재 시행의 기준 및 공소시효	[제4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리죄에 대한 관할권 확립 조치,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이 관할권을 가질시, 최적 관할권 결정을 위해 협의할 것 [제5조] 수사 및 기소는 각 계약당사국의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름 [제6조] 시효규정은 그 수사 및 기소를 하는 데 적절한 기간을 허용해야 함
제7조 (자금세탁) / 제8조 (회계)	
자금 세탁의 전제 범죄 규정, 기업회계기준	[제7조] 국내뇌물죄를 자금세탁 관련 법령의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리죄에 대하여도 전제범죄로 할 것 [제8조] 장부누락거래 및 계정 설정, 부적절한 내역의 거래, 허위기장 금지 조치와 이에 대한 민사적·행정적 또는 형사적 벌칙을 부과
국제공조	[제9조] 당사국 간의 사법공조 보장, 은행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사법공조 거절 금지 [제10조] 범죄인인도조약상 인도대상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는 당사국 간에도 이 협약을 법적 근거로 할 것을 고려할 것 [제11조] 당사국은 하나 또는 복수의 기관을 범죄인 인도요청 및 요청접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
제12조(감시 및 후속조치) / 제13조(서명 및 가입) / 제14조(비준 및 수탁처) / 제15조(발효) / 제16조(개정) / 제17조(탈퇴)	
협약이행조치	[제1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시·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조치 프로그램의 수행에 상호 협력할 것 [제13조/14조/15조] 이 협약은 각 서명국의 법에 따라 수락·승인·비준됨, 이 협약은 10대 수출국 전체 수출액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5개국의 수락서·승인서·비준서의 기탁일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됨

자료: 장진희·조은경(2012: 32-33) 재인용

## 2) 이행입법 발효현황

OECD 뇌물방지협약은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34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콜롬비아,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의 6개 비회원국들이 협약을 결정하였다. 성공적인 국제적 반부패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건은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체제를 위한 규정이 요구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OECD 뇌물방지협약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행체제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며 협약 이행에 대한 당사국간 압력이 상당히 작용하게 된다. 뇌물방지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하기로 한 최초의 합의이며, 뇌물을 주는자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벌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뇌물방지협약의 채택 이후 심사 제도를 통한 이행점점을 하고 있는데(박석범, 2004),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산하에 뇌물방지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각 당사국의 국내 이행법을 단계별로 심사하고 이행조치에 대한 적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하였으며 10월에 칠레와 프랑스, 12월에 노르웨이를 대상으로 한 수검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국가별 이행조치의 심사와 함께 협약의 효율적 운영과 해외 사회사의 뇌물공여 규제, 뇌물방지협약과 민간부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TI), OECD민간자문위원회 등의 민간부분 역시 회원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관심을 촉구하였다(김의환, 2004).

다음은 동 협약의 이행입법 발효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표로서 몇 가지 특성을 가진다. 첫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로서의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각과 법률에서는 뇌물수뢰행위가 부패로 규정되어 처벌되는 것이 주된 경향이다. 그리고 협약을 비준한 참여 국가의 전 세계 수출입액의 약 60% 이상 해외 직접투자 역시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2013). 다음 <표 3>은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발효 현황이다.

<표 3>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발효 현황

국가	비준서 기탁	협약 발효	이행입법 발효
아르헨티나	2001. 02. 08	2001. 04. 09	1999. 11. 10
호주	1999. 10. 19	1999. 12. 18	1999. 12. 17
오스트리아	1999. 05. 20	1999. 07. 19	1998. 10. 01
벨기에	1999. 07. 27	1999. 09. 25	1999. 04. 03
브라질	2000. 08. 24	2000.10. 23	2002. 06. 11
불가리아	1998. 12. 22	1999. 02. 15	1999. 01. 29
캐나다	1998. 12. 17	1999. 02. 15	1999. 02. 14
칠레	2001. 04. 18	2001. 06. 17	2002. 10. 08
체코	2000. 01. 21	2000. 03. 21	1999. 06. 09
덴마크	2000. 09. 05	2000. 11. 04	2000. 05. 01
에스토니아	2004. 12. 14	2005. 02. 12	2004. 07. 01
핀란드	1998. 12. 10	1999. 02. 15	1999. 01. 01
프랑스	2000. 07. 31	2000. 09. 29	2000. 09. 29
독일	1998. 11. 10	1999. 02. 15	1999. 02. 15
그리스	1999. 02. 05	1999. 04. 06	1998. 12. 01
헝가리	1998. 12. 4	1999. 02. 15	1999. 03. 01
아이슬란드	1998. 08. 17	1999. 02. 15	1998. 12. 30
아일랜드	2003. 09. 22	2003. 11. 21	2001. 11. 26
이스라엘	2009. 03. 11	2009. 05. 10	2008. 07. 21
이태리	2000. 12. 15	2001. 02. 13	2000. 10. 26
일본	1998. 10. 13	1999. 02. 15	1999. 02. 15
한국	1999. 01. 04	1999. 03. 05	1999. 02. 15

룩셈부르크	2001. 03. 21	2001. 05. 20	2001. 02. 11
멕시코	1999. 05. 27	1999. 07. 26	1999. 05. 18
네덜란드	2001. 01. 12	2001. 03. 13	2001. 02. 01
뉴질랜드	2001. 06. 25	2001. 08. 24	2001. 05. 03
노르웨이	1998. 12. 18	1999. 02. 16	1999. 01. 01
폴란드	2000. 09. 08	2000. 11. 07	2001. 02. 04
포르투갈	2000. 11. 23	2001. 01. 22	2001. 06. 09
러시아	2012. 02. 17	2012. 04. 17	2011. 05. 16
슬로바키아	1999. 09. 24	1999. 11. 23	1999. 11. 01
슬로베니아	2001. 09. 06	2001. 11. 05	1999. 01. 23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 06. 19	2007. 08. 18	2004. 04. 27
스페인	2000. 01. 04	2000. 03. 04	2000. 02. 02
스웨덴	1999. 06. 08	1999. 08. 07	1999. 07. 01
스위스	2000. 05. 31	2000. 07. 30	2000. 05. 01
터키	2000. 07. 26	2000. 09. 24	2003. 01. 11
영국	1998. 12. 14	1999. 02. 15	2002. 02. 14
미국	1998. 12. 08	1999. 02. 15	1998. 11. 10

자료: <http://www.oecd.org/daf/anti-bribery/antibriberyconventionratification.pdf>

### 3. 선행연구 검토 및 한계

반부패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뇌물방지 혹은 반부패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국내의 법·제도적 논의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 주요 내용이 국내 정책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롯한 국제적 규범에 대한 고찰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반부패 협약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Moran(1999), Gordon & Miyake(2001), Sanyal(2005) 등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국제 상거래 또는 국제통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들은 먼저 법률적 또는 윤리적 검토수준에서 논의하여 왔으며<sup>8)</sup> Brinkerhoff(2000)는 반부패활동을 추구하고 설계하고 시작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의지를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는 반부패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정치적 의지와 함께 국가레짐 유형,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 국가의 부패정도, 기득권, 시민사회의 역할 등이 반부패 전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 있어서 정재화(2000)는 글로벌시대의 뇌물방지협약을 중심으로 한 반부패 대책이 전개될 새로운 국제질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간 무역 등에서

8) Martin et al.(2007)은 개별 기업의 뇌물 공여 행위는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적·제도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중심으로 그러한 영향관계를 다차원적 분석기법을 통하여 밝혀냈다. 그리고 Sanyal(2005)은 경제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뇌물공여 행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변수임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부패의 방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조건임을 상기한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패를 감소하고 국제사회 공조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류재수(2004)는 뇌물방지협약을 중심으로 하여 부패방지 규범화에 중점을 두어 부패방지 및 척결에 있어 국내의 부패방지규범이나 제도가 아닌 전 세계적인 부패방지 및 척결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면서 부패방지의 규범화를 설명하고 이러한 규범화 과정에서 각국의 반부패 규범과 기구 및 국제협력을 통해 부패방지 규범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김유경(2007)은 반부패의 국제레짐 형성동인과 이를 주도하는 세력의 추진전략을 분석하고 현재 반부패 국제규범 및 제도화 과정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반부패국제레짐의 형성이 가능한 이유로서 지구적 수준에서 세력관계와 이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규범적 형태의 영향을 받으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이해에 따라 행위자들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부딪치고 조정되는 역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서로 갈등적인 이익과 관념들이 하나의 주도적인 입장에 포섭되거나 조정을 통한 동이가 그 이슈영역에서의 국제레짐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태황(2008)은 OECD 뇌물방지협약의 경제적 의미와 그 운용방식을 동료국의 검토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고, 뇌물방지협약과 관련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주요내용과 의미를 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윤문무(2009)는 반부패정책에 있어서 우리보다 성공적인 싱가포르, 홍콩의 반부패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반부패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고통치자의 정치적 의지와 함께 강력한 독자적 권한을 지닌 부패통제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최고통수권자의 강한 실천의지와 함께 반부패 전담기구의 실질적 권한 부여가 매우 중요함을 제시한다. 오규진(2011)은 국제적 뇌물거래의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하여 알아보고, 뇌물방지협약이 있기 전까지의 과정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 국내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운용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이 나갈 방향을 밝히고 있다. 장진희·조은경(2012)은 OECD 뇌물방지 작업반의 이행 보고서와 국내 반부패 관련 법제의 평가를 주요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반부패 관련 법제와 비교를 통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국내법과의 균형이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여 국내 반부패 법제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안상욱(2012a)의 경우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의 협약비준과 국내법적 절차의 도입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례로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각종 뇌물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안상욱(2012b)은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의 집행을 한국, 캐나다, 프랑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들 세국가의 공통점은 역시 거버넌스의 개선과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의 도입보다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뇌물공여행위에 있어서 처벌 장치가 부족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선 연구들은 동 협약의 규범과 법률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전개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국제 반부패 협약의 이행과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상

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가 국가, 정부 단위의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D'Souza(2009)는 2002-2006년 기간 동안 143개국을 대상으로 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과 국가 간 무역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종속변수로 국가별 수출량 독립변수로는 뇌물방지협약의 가입국여부, 부패지수, 지역무역협정, 통화 연합, 환율 변동성, 수출국 GDP, 수입국 GDP, 수출국 인구, 수입국 인구, 공용 언어, 식민지 관계, 거리, GATT/WTO 중 하나만 가입한 국가, GATT/WTO 모두 가입한 국가, 그리고 국경지역이 양자 간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Lippit(2013)는 118개국을 대상으로 해외뇌물관행법(FCPA)의 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FCPA의 위반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거시 경제적 요인과 그 밖의 다른 요인의 변수들(연료 수출, 제조 수출, 정부의 크기, 농업 수출, 초기 민주주의 수준, 1인당 GDP, WTO 가입 연수, U.S 투자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거시 경제적 요인과 산업과 관련된 변수가 해외뇌물관행법의 국제적 위반 가능성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Kim(2009)은 미국의 48개의 주정부간 협약의 참여수준에 있어서 주요한 변수를 주정부의 물리적·경제적 능력으로 주정부의 크기, 주정부의 재정력, 주정부 관료의 역량, 지역의 특성으로 진보적 성향, 주정부내 아프리카 미국인의 비율 증가, 이웃효과 등을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으로 주정부의 정당 간 경쟁정도, 선거시기 여부, 연방정부에 개입 정도에 따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국내의 연구에 있어서도 국가 간 반부패 협약의 성과 및 이행수준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며 제도의 성과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가 그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배재현·문상호(2006)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효과성을 연구하였으며 이는 내부고발제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반부패의 성과에 있어서 행정·문화적 요인으로 구조적 부패, 조직윤리와 권위주의, 가족적 집단주의, 정적 인간주의, 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정규정으로 전달기구 설치, 신고자 보호, 처벌면제, 신고자 포상, 보복에 대한 처벌 등 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명재진(2007)은 지방정부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는 행정절차를 통해 부패방지 방안으로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의제도가 부패방지에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제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및 주민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병익·이상범(2008)은 반부패정책의 성과에 있어서 구조적부패 존재, 조직윤리강조, 권위주의 문화, 집단주의 문화, 정적인 간주의, 부패고발자 보복가능성, 부서의 독립성, 기관장의 의지, 부패행위 처벌강도, 반부패정책 지속가능성, NGO 등 시민들의 부패감시정도에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라영재(2009)는 반부패제도의 효과성을 연구하였으며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외부통제요인, 리더십요인, 직접적 통제요인, 공개성요인 등으로 구성하여 반부패제도의 확립과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홍주(2013a)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정책의 결정 및 그 확산이 외부적 결정요인인 지역적 확산, 그리고 내부적 결정요인으로 재정·경제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하여 각각 영향 받을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김홍주(2013c)는 국가 간 반부패 협약의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국가 간 반부패 협약의

참여와 확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처음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 결정요인을 국내의 정치적 상황과 함께 국가 간의 이해관계 측면에서의 경제적 이익추구, 부패의 문제를 범국가적 공동대응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자발적인 협력, 그리고 국제적 규범의 압력에 순응이 중요한 이론적 관점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홍주·김판석(2013)의 연구에 의하면 반부패제도인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성과에 있어서 정책의 실행가능성, 신고절차의 간명성, 부서의 독립성, 기관장의 의지, 정치언론의 관심도, 시민참여와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반부패제도의 성과를 위하여 법적안정성의 확보, 담당 인력의 독립성 및 전문성확보,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시민의 참여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듯이 국제적 반부패 협약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현재까지 상당히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반부패 협약의 참여의 시기와 이행정도가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한다면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탐색해보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 반부패의 일환인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하여 국가의 무역규모 및 경제발전,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과 부패처벌강도와 관련된 경제·제도적요인,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 여성정치가의 참여,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논의한 정치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의 정치 및 언론의 참여 보장, 그리고 교육의 질을 논의한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4. OECD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 결정요인

##### 1) 경제·제도적 요인

반부패의 논의는 경제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패는 투자와 사적 영역의 경제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경험적 연구와 함께 제시하기도 한다(Brinkerhoff, 2000). OECD는 1980년대 말부터 국제적인 뇌물수수 관행으로 인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왜곡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러한 결과 1997년 OECD뇌물방지 협약을 제정하였고 세계 주요 무역국을 포함한 34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9년 2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위 협정과 각국의 이행법률의 시행은 대외 무역 및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국제기업에게 급격한 해외사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않고서는 원활한 해외사업 활동의 수행이 매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김희철, 2000).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높으면서 부패 및 뇌물사건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 국가에 있어서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대책과 제도의 이행이 새로운 국제 상거래 관행의 정립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김유경(2007)은 반부패 이슈의 규범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주의적 관점이라 논의하고 있다. 이는 부패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맥락에서 논의되기 보다는 경제적 개념으로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분석의 틀은 세계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서구적 시각이 암묵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논의는 국제적 반부패 협약으로써 OECD 뇌물방지 협약이 국제무역거래과정에서 국제적 협약을 통한 뇌물제공을 범죄화하도록 한 국가는 국제무역의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OECD 국가의 수출무역에 있어서 보다 부패가 덜한 국가로 그 관계를 선호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 준다(D'Souza, 2009).<sup>10)</sup>

각국에 있어서 사회제도, 기업 및 정부의 관행의 차이는 상당히 존재하여 국제적 반부패 협약의 이행함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협약의 제정과 이행이 부패관행을 줄임과 동시에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의 확대를 방지하고 경쟁적인 국제경제 환경을 가져 올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다. 국제반부패규범의 도입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제주체인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기업과 기업인은 그 무역 규모가 클수록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일찍부터 해외뇌물방지를 기업윤리로 채택한 국가의 기업에 있어서는 이미지 및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를 거두어 장기적으로 국가 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구정우(2007)는 국제정치학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체제 내의 협력과 동맹이란 주권국가의 도구 주의적 자기이해의 추구로 논의하였으며(Keohane, 1984), 국제규범은 권력투쟁 혹은 세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강대국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고, 국제관계를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인 경우 세계인권 규범을 국내규범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의 기업은 자국의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심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인권영역에서 역시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하려 한다. 김홍주(2013c) 역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가 간 경제적 거래행위는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이를 위한 무역량이 많고 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보다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UN, WTO,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부패국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반부패 라운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부패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재 및 압력은 계속 증가하게 될 전망으로 부패척결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국가발전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패척결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하면, 국제무역질서에서 퇴출당하고 경제성장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sup>11)</sup>

9) 부패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성장과 투자에 대한 부패의 영향(Mauro, 1995; 1997; Knack & Keefer, 1995), 정부지출의 구성비에 대한 부패의 영향(Tanzi & Davoodi, 1997; Mauro, 1998), 외국인 직접투자의 배분에 대한 부패의 영향(Wei, 1997)을 분석해서 부패의 효율성에 대한 함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부패가 성장 및 투자를 감소시키고 공공투자에 대한 지출, 운영 및 유지를 왜곡하며, 부패수준이 보다 낮은 국가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패가 경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투자위험을 증가시키고 투자율을 크게 낮추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Brunetti, Kisunko & Weder, 1997).

10) OECD 기업들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부패한 국가에 그들의 수출품목이 증가하게 됨을 역설적으로 논의하며 이러한 효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D'Souza, 2009).

11) 국가의 경제적, 제도적 역량은 활동적 상황에서 포함된 협약의 장에 물리적 경제적 조건을 말한다. 경제적 물리적 조건은 상당히 이용가능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활동가의 전략적 활동이 그들이 위치하는 다양한 제약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국가의 정책결정의 물리적 경제적 역량이 정책성과에 넓고 다양하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립되어 왔다(Dye, 1966; Morgan & Hirlinger, 1989).

국가의 경제적 역량 외에 국가를 통한 제도 및 관료의 역량은 협약의 가입에 대한 속성이 고려된다(Zimmerman, 2002). 특히 제한된 역량을 가진 국가는 협약의 의무를 충족할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가 존재하며 협약의 가입에 소극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정책적 개혁을 가능하게 협약의 참여로 얻는 혜택의 신뢰성이 높게 된다(Kim, 2009). 그리고 특히, 민주적 제도의 확립의 세계적 추세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각 국가의 시민적 요구의 응대와 함께 정부 및 다른 영역에서의 부정행위 및 낮은 정부의 신뢰성에 대하여 시민의식의 성숙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Brinkerhoff, 2000). 즉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이행은 국가 및 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sup>12)</sup> 또한 규범의 성공은 법과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에 좌우되며 정책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 누가 그러한 것을 정확히 감사(monitoring)하는지 여부, 그리고 누군가 그러한 규범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김유정, 2007).<sup>13)</sup> 본 연구는 경제·제도적 차원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논의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논의에 따라 경제적 규모 및 발전, 그리고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부패행위의 처벌강도가 이행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무역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1-1-1 해외시장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1-1-2 국내시장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1-2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1-3 정책신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1-4 처벌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 2) 정치적 요인

국가의 정치적 상황은 정책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모든 정책이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Besley & Case, 1995). 국가 간의 협약을 논의할 때 역시 각국의 협력적 참여와 이행을 위하여는 국가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의 공유가 요구되며 공통된 이해의 반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김홍주, 2013c). Kim(2009)은 이러한 이해의 공유는 잠재적인 공통의 이익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선호를 기대하게 하고 국가 간의 협약에 있어서 역시 이러한 같은 이념은 다른 국가의 협조를 기꺼이 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보수적인 이념은

12) Mazmanian & Sabatier(1983)는 정책내용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이 정책집행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패방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13) 부패공직자 중에서 극히 일부만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공직자는 반성을 하기보다는 자신은 재수가 없어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부패방지에 있어 부패행위 유발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처벌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며 이는 반부패정책의 효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민병익·이상범, 2008).

14) 시민의 이념 역시 국가 간 협약의 여론에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게 된다(Barton, 1967; Graves, 1934; Leach et al., 1969).

변화를 주저하게 하고 전통을 고수시키며 인적조건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능동적 역할을 꺼려하는 반면 진보적 성향은 보다 변화를 지지하고 사회적인 병을 공격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힘을 기꺼이 사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진보적 성향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의 권한을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이념으로 국가 간 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sup>15)</sup>

다음은 여성의 정치 참여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면서 비례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정치·사회 분야의 참여가 확대되는 상황은 정치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민의 삶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능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하였다(김원홍 외, 2002).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성의 정치 참여확대를 통한 부정부패의 척결과 반부패 정책의 이행노력을 들 수 있다.<sup>16)</sup>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과는 상이한 사회적인 태도에 관한 연구들도 부패에 관한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Dollar, Fisman & Gatti, 2001: 423). Eagly & Crowley(1986)는 여성이 남을 돕는 태도를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주었으며, Glover, Bumpus, Logan & Ciesla(1997), Reiss & Mitra(1998)는 여성이 윤리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하였고(진종순, 2011 재인용), Azfar, Knack & Lee(1999)는 상공 분야와 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사회적인 형평성 뿐 만 아니라 부패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Dollar, Fisman & Gatti(2001)는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진종순, 2009).<sup>17)</sup> 국민권익위원회(2012)는 반부패 청렴이 경제성장 및 선진 일류국가의 진입을 위한 초석이라는 국제적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 노력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G20, APEC 등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결조건으로서 반부패이슈 논의의 강화하고 있으며 OECD 및 UN 등은 각각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심사(1997),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2010) 등 각국 반부패 이행상황에 대한 상호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 처벌이라는 고전적 대응에서 반부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공공부문, 기업, 민간부문, 청소년, 여성 등 사회 각 부문의 반부패 파트너십의 구축노력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특별 관리로서 여성의 우선배치 방안 등이 고려하고 있다(부패방지위원회, 2005).

선거시기는 정책의 도입에 있어서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 및 정치인은

15) 정치적 성향은 리더의 정치적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에 있어서 단체장의 진보적 성향은 인간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 적극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홍주, 2013b).

16)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평등을 통한 개발의 성인지화”(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s, Resources, and Voice)라는 정책보고서에 의하면,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이와 같은 관점에서 Shelley(2001: 223)는 멕시코에서 부패행위를 줄이기 위해 주차위반 단속업무에 여성이 고용된 결과, 부정적으로 발행된 주차티켓의 수가 감소되었고 재정수입이 증가되었다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진종순(2005)의 127개 국가에 대한 비교연구에 의하면,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참여도(female labor force)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관한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04, 2005년도에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 바탕을 둔 진종순·서성아(2007)의 연구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패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광국(1996)의 연구도 여성이 남성보다 판료부패에 대해 좀 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즉 부동산 투기, 올바른 시민의식 결여, 공무원 매수 등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에 대해서 여성이 더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정책의 결정자로서 논의되는 바(Schlesinger, 1966), 정치적 리더가 협약에 참여하는 여부에 대한 이론적 관심은 정치적 기회비용으로 논의될 수 있다(김홍주, 2013c). 정치제도인 선거는 국가 간의 협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 선호에 따른 정책적 선택의 동기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Zimmerman, 2002), 이에 따라 전략적 상황에 따라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0). 그리고 이와 함께 선거시기에 정치가의 정치적 야심이 국가 간, 지역 간 필요한 수요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간 협약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은 정치적 기회비용으로 논의되어지고 선거시기 등에 있어서 더욱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듯 선거시기에 있어서 정부 관리자 및 정치가는 선거활동 등의 노력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여러 국내적 안전 및 국내 수요에 대한 현저성 있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논의하고 상대적으로 그러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치가 및 관료는 오히려 선거시기에 비활동적일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Kim, 2009).<sup>18)</sup> 그에 반하여 Berry & Berry(1990)는 정책의 채택의 관점에서 선거시기에 채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악으로 인식될 때, 선거시기에 출마업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그 시기가 임박할수록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노력이 선거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전자에 가정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 결정요인을 알아보았으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집권당의 진보성향,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선거시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집권당이 진보성향을 가진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2-2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2-3 선거시기의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이 낮을 것이다(-).

### 3) 사회적 요인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진 제도이며 부패방지를 위한 의지를 높이게 되고 새로운 참여자에게 정치적 참여와 시민적 자유, 그리고 언론 활동의 자유 등을 통한 투명성을 보장해주게 된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반부패 규범의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NGO의 숫자 증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자유의 증가로 반부패적 논의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참여적 과정이 나타나 있다(김유경, 2007). 따라서 민주화 수준을 시민사회의 성숙, 견제와 균형과 같은 원칙이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기회를 축소시키고 부패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Rose-Ackerman, 1999). OECD(1997), UNDP(2002), 유엔반부패협약(UNCAC) 등 국제기구에서는 윤리기반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들은 국가 차원의 협력적 반부패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 등과 더불어,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 시민의식의

18) 모든 정책은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도 정책의 도입 시 선거시기는 매우 민감한 시기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Elginer, 1973; 석호원, 2010).

개혁 등을 논의하기도 한다. 즉 부패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미디어 및 시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Brinkerhoff, 2000).<sup>19)</sup> 그리고 이와 함께 활발한 언론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활성화 특히 NGO의 성장과 역할 등이 부패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의 제기과 함께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입증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Landell-Mills, 1999; Thomas, 2000; Gonzalez de Asis, 2000; Pope, 2000; Stapenhurst, 2000; Holloway, 2001; 김제선, 2004 재 인용). 따라서 뇌물방지협약의 이행 및 효율적인 부패방지 대책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 및 시민활동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마지막으로 국가의 교육수준은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부패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패에 대한 용인정도가 낮으며 따라서 이러한 국가는 교육수준이 낮은 국가에 비해 부패발생의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Lucas, 1988; 김나영·최진욱, 2010 재 인용). 따라서 교육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가 간 반부패 협약인 뇌물방지 협약의 이행준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본 논의는 사회적 요인이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시민참여 및 언론자유 보장, 교육의 질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시민참여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3-2 언론자유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3-3 교육의 질이 높은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다(+).

### Ⅲ. 연구조사 설계

####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이러한 종속변수인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준수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이행보고서(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서 분석을 위한 자료의 접근가능성으로 인하여 2012년도까지로 분석범위를 한정하였으며 평가 대상국 중 OECD 비회원국 6개국 포함 결측치를 제외한 33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sup>21)</sup>

19) 민병익·이상범(2008)의 연구에서 역시 시민사회는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혁파에 중심세력이고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건전한 시민의 존재와 NGO의 조직적 활동의 반부패 활동에 긍정적 기여를 논의하고 있다.

20) Kpundeh(2004)는 반부패 전략으로서 지역과 시민의 노력으로서 옴부즈맨제도와 같은 시민감사관제도를 통한 반부패제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개입으로 부패를 감시하는 기능이 훨씬 성공적일 수 있는데 중추적인 역할 제시와 함께 보다 지속가능한 감시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즉, 강한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율과 정치적 자유 등이 존재하는 체계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료가 되는 정치적 경쟁에 있어서 필수적일 수 있음을 역시 논의한다.

21) OECD 뇌물방지협약은 40개국이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6개국은 현재까지 OECD 회원국이 아니

그 밖에 독립변수에 대하여 DPI(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은행(WB)에서 제공하는 세계발전지수(WDI)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각 국가의 경제지표 및 사회적 지표를 알아보기 위하여 WEF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둘째, 각 국가의 경제적 지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WDI를 활용하여 정부의 1인당 GDP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SD(Norwegian Social Science Data Services)에서 제공하는 DPI(Database of Political Institutions)는 각 국가의 정치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국가의 정치성향, 여성정치가의 비율, 선거 시기 정도를 파악하였다.

## 2. 분석모형 설정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이다.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뇌물방지협약은 국가 간에 있어서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수집가능성 고려하여 분석기간은 2008-2012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continuous variable)가 아니라 순서화 된(ordered) 형태의 자료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한다. 종속변수가 순서형(ordered type)을 갖는 경우 회귀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형회귀모형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산적인 응답을 처리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회귀식의 단점과 순서화 된 선택이 어려운 로짓모형(logit model)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이다(김호정 외, 2006; 임다희·권기현, 2013).

이러한 순서형 변수가 “최상”, “양호”, “보통”, “불량”의 4가지로 구분된다고 가정할 때, 이를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속변수의 선택을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_i^*$  가 존재하고,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변수의 선형함수로 표현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y_i^* = \alpha + \beta x_i + \epsilon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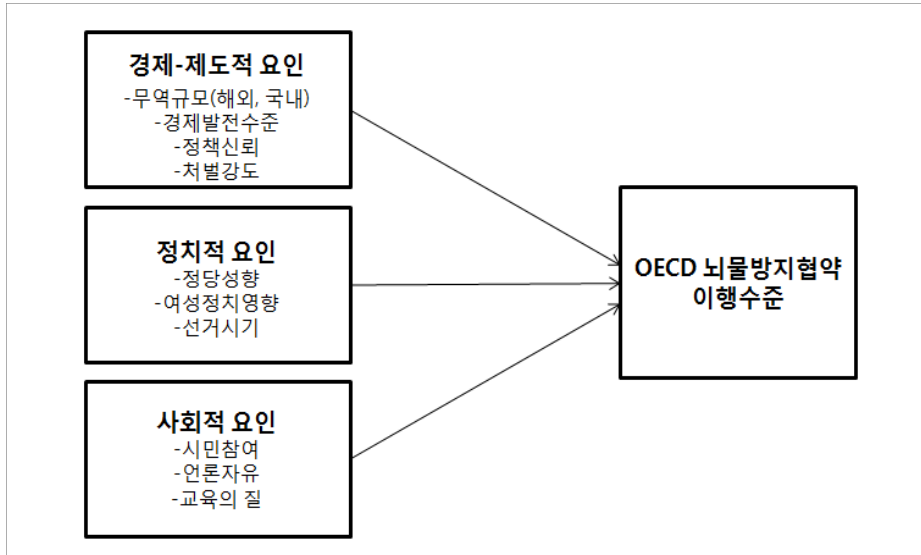
여기에서  $y_i^*$ 가 매우 낮은 사람은 4가지 선택이 있을 때 “불량”을 선택하고, 그 다음 “보통”, “양호”, “최상”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된다. 즉, 관찰된 종속변수  $y_i$  다음과 같이 결정됨을 가정하고 있다(민인식·최필선, 2012).

$$\begin{aligned} y_i = 1, & y_i^* \leq \delta_1 \text{ 일 때 ('불량' 선택)} \\ y_i = 2, & \delta_1 < y_i^* \leq \delta_2 \text{ 일 때 ('보통' 선택)} \\ y_i = 3, & \delta_2 < y_i^* \leq \delta_3 \text{ 일 때 ('양호' 선택)} \\ y_i = 4, & \delta_3 < y_i^* \leq \delta_4 \text{ 일 때 ('최상' 선택)} \end{aligned}$$

다. 2005년에 처음평가를 시작하여 2008년을 기점으로 전형 이행하지 않는 혹은 소극적, 보통, 적극적 국가로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 평가보고서는 2013년도가 발표되었으며 2012년의 이행수준을 평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접근성을 통하여 OECD 회원국 33개국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에 대한 결정요인을 추정하고자 하며 다음 <그림 1>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틀



### 3. 변수의 측정

#### 1) 종속변수

OECD 뇌물방지이행협약의 이행평가 보고서는 협약에 서명한 40개국의 개인과 기업의 책임성을 위하여 채택된 것으로 대략 전 세계 수출의 2/3에 해당하며, 해외 직접투자액 역시 90%에 이르는 국가들이다. 따라서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러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있다.<sup>22)</sup> 본 논문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33개국의 국가 간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OECD 국가의 뇌물방지협약의 비준과 그 평가점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OECD 뇌물방지이행평가보고서(OECD Anti-bribery Convention Progress Report)를 활용하였으며 협약의 이행 수준에 대하여 “소극적 이행” “보통 이행” “적극적 이행”으로 평가하고 있는 자료<sup>23)</sup>를 활용하였다.

22) 평가 질문 항목 첫째, 통계와 사례(조사, 주요 사례의 시작과 끝, 정보에 대한 접근성)를 질문하고 있으며 둘째, 각 국가의 뇌물조항에 대한 법적인 체계(해외 뇌물의 부적합한 정의, 사법적 제약, 기업에 대한 책임성 부족, 자회사, 합작투자를 위한 기업의 책임 실패, 부적합한 제재, 제한의 불충분한 법령)와 이행강제체계(집행조직에서 조정의 부족, 조사와 기소간의 조정부족, 범죄의 종류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관과 감사의 훈련 부족, 상호 법적 지원을 얻는 데 어려움,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무능력, 대중 인식의 부족, 부적절한 회계 및 감사 요구 사항)의 이행을 위한 체계에 대한 전반적 질문을 하고 있다(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부록C 참고).

23)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행수준의 평가는 2009년 보고서 자료가 2008년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2) 독립변수

경제적 요인으로 무역규모는 해외시장 및 국내시장 규모로 구분하여 알아보았으며 개별국가의 경제적 발전정도는 1인당 GDP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무역규모는 경제적 세계화와 함께 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등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무역규모는 WEF 보고서에서 매해 발표하는 해외시장규모와 국내시장규모를 활용하였으며 1-7점으로 구성되었으며 7인 경우 무역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1인당 GDP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과 처벌강도에 관한 자료 역시 WEF 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변수역시 1-7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의 신뢰성의 경우 7인 경우 신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처벌강도의 경우 1인 경우 처벌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 요인에 관한 변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DI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먼저 집권당의 진보성향 여부에 있어서 집권당이 진보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치가의 비율은 정당 내에 여성의원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선거시기는 국가의 책임자에 대한 선거시기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선거 시기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의 변수는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시민참여, 언론자유, 그리고 교육의 질을 가지고 파악하였다. 시민참여 변수는 WEF 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1-7점으로 구성되었고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언론자유는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00점 만점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100점인 경우 언론자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질 역시 WEF 보고서를 활용하였으며 1-7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의 질이 좋을수록 높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 <표 4>는 변수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표 4> 변수의 측정

	측정항목		변수의 조작화	단위	
독립변수	경제·제도적 요인	무역 규모	해외시장	1-7점(작음=1, 큼=7)	Index
			국내시장	1-7점(작음=1, 큼=7)	Index
			경제발전	1인당 GDP	US\$
			정책신뢰	1-7점(낮음=1, 높음=7)	Index
			처벌강도	1-7점(높음=1, 낮음=7)	Index
	정치적 요인		정당성향	진보=1, 보수 및 중립=0	더미변수
			여성정치영향	여성의원 비율	%
			선거시기	선거시기=1, 비선거시기=0	더미변수
	사회적 요인		시민참여	1-7점(높음=1, 낮음=7)	Index
			언론자유	0-100(높음=0, 낮음=100)	Index
		교육의 질	1-7점(나쁨=1, 좋음=7)	Index	
종속변수	OECD 뇌물방지협약이행수준		소극적 또는 불이행=1, 보통이행=2, 적극이행=3	순서형 척도	

있는데, 2009, 2010, 2011년도의 발표자료는 소극적 및 전혀 이행하지 않는 국가, 보통 이행국가, 적극적 이행국가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2012, 2013년 이후 전혀 이행치 않는 국가 및 소극적 이행국가, 제한적 이행국가, 보통 이행국가, 적극적 이행국가로 보다 세분화 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하여 소극적 및 전혀 이행치 않는 국가를 한 범주로 보고 소극적 이행, 보통 이행, 적극적 이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IV. 실증적 분석결과

UN 반부패 협약의 비준결정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변수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기술통계 분석

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협약이행	161	1.689	.785	1	3
해외시장	165	5.356	.639	3.8	6.7
국내시장	165	4.594	.965	2.5	7
경제발전	162	38229.51	22735.85	7596.039	114210.8
정책신뢰	165	5.332	1.007	2.5	6.7
차별강도	165	5.326	.799	2.7	6.8
진보성향	140	.364	.483	0	1
여성정치영향	165	25.461	10.086	7.9	47
선거시기	161	.093	.292	0	1
시민참여	164	1.128	.459	1	3
언론자유	164	23.085	14.253	9	81
교육의 질	165	4.505	.929	2.7	6.7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향요인의 결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순서화 로짓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먼저 경제·제도적 요인으로써 무역규모인 해외시장과 국내시장규모가 각각  $p < 0.1$ ,  $p < 0.05$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승산비(odds ratio)는 3.925, 3.944로 나타났다(가설 1-1 채택).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무역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뇌물방지 이행협약을 보다 잘 이행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반부패라운드에 대한 대책과 제도의 이행을 통한 새로운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더욱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반부패 논의와 규범을 사회적, 정치적 맥락 보다는 경제적 개념으로 보고 세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암묵적 시각을 반영(김유경, 2007)한다는 논의를 뒷받침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제발전 역시 그 영향력이 적게 나타나지만  $p < 0.01$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승산비(odds ratio)는 1.000으로 나타났다(가설 1-2 채택). 국가의 높은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일수록 국제적 반부패 협약의 이행 준수가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구정우(2007)가 논의한 바와 같이, 국제규범은 세계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논의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일 경우 세계규범을 국내규범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 제도요인으로서 차별강도는

협약의 이행수준에 있어서 가설과는 같은 방향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가설 1-4 기각). 이에 반하여 정책의 신뢰성은  $p < 0.01$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승산비(odds ratio)는 3.603으로 나타났다(가설 1-3 채택). 국가 정책의 신뢰성은 관료의 역량에서 나오며 이러한 관료의 역량은 정책적 개혁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신뢰성과 연관되어 협약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게 된다(Kim, 2009). 즉,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이행은 국가 및 제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표 6〉 경제·제도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Sig	Exp( $\beta$ )
경제·제도적 요인	무역 규모				
	해외시장	1.367	.794	.085†	3.925
	국내시장	1.236	.533	.020*	3.443
	경제발전	.001	.001	.000**	1.000
	정책신뢰	1.282	.432	.002**	3.603
	처벌강도	-.190	.427	.656	.827
	/cut1	21.591	4.327		
	/cut2	24.349	4.419		-
Pseudo $R^2$		.447			
Log likelihood		-89.972			
LR $X^2(5)$		145.74**			
N		158			

† < 0.1. \*P < 0.05. \*\* P < 0.01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의 국가인 경우와 선거년도에 협약의 이행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같은 부호 각각 정(+), 부(-)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설 2-1, 2-3 기각).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영향이  $p < 0.01$  수준에서 정(+)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승산비(odds ratio)는 1.056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정치가가 각 국가의 정당 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정치, 사회 분야의 참여확대와 함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은 반부패 노력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이는 Eagly & Crowley(1986), Glover, Bumpus, Logan & Ciesla(1997), Reiss & Mitra(1998), Fisman & Gatti(2001)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그 영향력이 부패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부패를 대하는 태도가 남성과는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7〉 정치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Sig	Exp( $\beta$ )
정치적 요인	진보성향	.008	.355	.981	1.008
	여성정치영향	.054	.016	.001**	1.056
	선거시기	-.966	.628	.124	.381

/cut1	1.385	.522	-
/cut2	2.956	.573	-
Pseudo $R^2$	.053		
Log likelihood	-132.075		
LR $X^2(3)$	14.85**		
N	136		

† <0.1. \*P<0.05. \*\* P<0.01

셋째 사회적 요인으로 시민참여수준의 경우 가설과 마찬가지로 부(-)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설 3-1 기각). 그러나 언론자유는  $p<0.1$  수준에서 부(-)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승산비(odds ratio)는 .967 로 나타났다(가설 3-2 채택). 일반적으로 활발한 언론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활성화 등이 부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논의와 그에 따른 연구들이 입증되어 왔음을 보았을 때, 부패방지 대책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교육의 질 역시 가설과 같이 정(+)의 부호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설 3-3 기각).

〈표 8〉 사회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Sig	Exp( $\beta$ )
사회적 요인	시민참여	-.602	.882	.495	.547
	언론자유	-.034	.019	.086†	.967
	교육의 질	.675	.215	.002	1.964
/cut1	81.719	1481.751	-	-	
/cut2	84.805	1481.754	-	-	
Pseudo $R^2$	.113				
Log likelihood	-145.091				
LR $X^2(3)$	37.13**				
N	160				

† <0.1. \*P<0.05. \*\* P<0.01

이상의 분석결과 경제·제도적 요인에 있어서는 무역규모인 해외시장, 국내시장의 규모와 국가의 경제발전정도,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요인으로는 여성정치인 비율,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는 언론의 통제정도가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 전체 모형의 분석결과에서는 앞선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제도적 요인인 정책의 신뢰성, 사회적 요인으로 언론자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으며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9〉 전체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수		Coef.	Std. Err	Sig	Exp( $\beta$ )	
경제·제도적 요인	무역 규모	해외시장	.315	.979	.748	1.369
		국내시장	2.616	.759	.001**	13.679
	경제발전	.001	.001	.000**	1.000	
	정책신뢰	.616	.643	.338	1.852	
	처벌강도	-.246	.464	.595	.782	
정치적 요인	진보성향	-.548	.561	.328	.578	
	여성정치영향	.114	.036	.002**	1.121	
	선거시기	-.978	.963	.310	.376	
사회적 요인	시민참여	-1.329	1.626	.413	.265	
	언론자유	.018	.067	.780	1.019	
	교육의 질	-.339	.452	.453	.712	
/cut1		21.591	4.327			
/cut2		24.349	4.419			
Pseudo $R^2$						.472
Log likelihood						-72.565
LR $\chi^2(11)$						129.65**
N						133

† <0.1. \*P<0.05. \*\* P<0.01

## V. 결론

부패는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항상 끊임없이 존재해 온 사회의 병폐이며 최근 들어 국제 정치·경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1990년대 이래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서 반부패논의가 진행되어왔으며 이러한 부패방지 논의는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공여행위가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간 무역과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이상환, 2007). OECD의 국제적 부패방지의 노력은 1999년 2월 15일자로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면서 각국의 부패방지 노력은 이제 국제경쟁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다(정재화, 2000). 이러한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가 간 반부패 협약이 보통 강제력에 있어서 한계를 가진데 비하여 비교적 강제력이 높은 협약에 속한다. 왜냐하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동료압력과 심사제도라는 기제가 있어 협약 당사국의 협약의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높기 때문이다(장진희·조은경, 2012).<sup>24)</sup>

24)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OECD의 심사제도와 동료압력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데 심사제도와 동료의 압력은 대체로 회원국 중 지정된 주심사국과 사무국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수개월간 심사대상국의 관련제도에 대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검토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OECD 내부문서로 발간 후 회원국에게 검토하게 한다. 그런 다음 전체회원국이 회원국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 답변을 듣고 최종 평가를 내리게 되며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이 심사제도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국 간 제

본 연구는 OECD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간 거래행위에 있어서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발효된 뇌물방지협약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매해 발표된 협약이행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각 국가마다 협약의 이행수준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각각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경제·제도·정치·사회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요인들이 국가 별 이행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순서형 로짓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연구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국가의 경제·제도적 요인에 있어서 먼저 국가의 무역규모와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뇌물공여 행위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나(김태황, 2000) 관건은 공정한 경쟁원칙과 기준과 규범 등이 제정되어 보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효과적이며 효과적인 제도의 활용함으로써 그러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규모가 크거나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일수록 합리적 행위자로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논의가 된다하더라도 국가 간 협약의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수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sup>25)</sup> 그리고 제도적 요인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제도의 신뢰성은 관료의 역량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한된 역량을 가진 국가는 협약의 의무를 충족할만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정책적 개혁의 동참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Kim, 2007). 따라서 민주적 제도의 확립의 국제적 추세와 이에 동참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낮은 신뢰성에 대해 국가의 시민적 요구와 의식의 성숙이 이를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 규범의 적극적 이행과 국가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게 연계된다.

둘째, 정치적 요인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을 경우 협약의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성향은 남성에 비하여 남을 돕는 행위와 함께 윤리의식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윤리적 태도를 지향하기 쉽다는 것이다(Reiss & Mitra, 1998).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는 국가의 윤리적 행동을 지향하는 반부패제도의 이행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요인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일수록 이행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활발한 언론의 활동은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패행위에 있어서의 감시와 노력 역시 국가 간의 협약이행 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도개선이나 이행을 위한 직, 간접적인 동료의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보고서의 채택 시 수검국은 의의제기가 가능하나 큰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OECD의 정식간행물로 출판되며 대외적인 공개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검국은 1년 내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한 조치 등에 관하여 모니터링 작업의 주무기관은 뇌물방지협약 제12조에 근거 뇌물방지작업반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뇌물방지작업반은 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입국의 이행법에 대한 입법심사(1단계심사)와 각국 방문을 통한 실사를 거친 이행심사(2단계 심사)를 실시키로 한다(박석범, 2004).

25) 국가의 안정적인 제도의 확립은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끔 한다. 이에 UN 반부패협약의 체결은 대외적으로 거래행위에 있어서 안정성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김홍주, 2013c).

OECD의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로 시작된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다자간 노력은 국제적인 거래와 계약에 있어서 만연된 부패가 자유롭고 투명한 공정경쟁을 해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신 자유주의적 논리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공식적인 제도와 국제협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협력의 참여와 이행은 불가능할지라도 각 국가들이 반부패 국제협력에 순응하도록 하는 노력은 가능할 것이다(이상환, 2007; 김홍주, 2013c).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 반부패 협약의 일환인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수준이 왜 국가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연구 질문과 함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제도적 상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에 따라 경험적 연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로는 OECD 국가의 이행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주요한 요인에 대한 탐색이 아직 부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반부패 전략의 이행은 정치적 리더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회원국 간 이행촉구를 위한 압력 등의 논의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 및 논의가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의 조작화에 대한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반부패협력의 이행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반부패의 노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준성. (1996).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의 규제에 관한 연구. 통상법률(통권 제 12호). 법무부.
- 구정우. (2007). 세계사회와 인권: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1978-2004. 한국사회학. 41(3): 287-322.
- 권은경·신동준. (1998). OECD 뇌물방지 협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연구, 국토. 206: 52-53.
- 김나영·최진욱. (2010).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 효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 김유경. (2007). 형성요인과 추진전략에 따른 반부패 국제레짐 성격 연구: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의환. (2004). OECD 반부패 논의 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 노력. OECD FOCUS 2004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홍·민무숙·김영미. (2002). 여성전문인력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정치, 행정, 연구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김제선. (2004). 반부패대안으로서NGO: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통권(7): 245-275.
- 김종범. (1997). OECD 뇌물방지협정에 따른 국내입법현황과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준기. (2003). 범세계화와 문화 변동, 다자간 차원에서의 해외 뇌물 규제에 관한 연구-국 제반부패 운동과 문화의 충돌, 현상과 인식. 27(3): 101-119.
- 김태황. (2008). OECD 뇌물방지협약의 경제적 고찰: 동료국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 13(4): 89-100.
- 김희철. (2000).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부패라운드의 영향과 대응전략, 관세학회지. 1(2): 165-190.
- 김홍주. (2013a).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정책 확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8(1): 55-88.
- \_\_\_\_\_. (2013b).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149-184.
- \_\_\_\_\_. (2013c). 국가 간 반부패 협력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 분석: UN 반부패협약(UNCAC) 비준(批准)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2(4): 197-230.
- 김홍주·김관석. (2013). 지방정부 위기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반부패 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9(12): 23-54.
- 라영재. (2009). 지방정부 부패통제전략의 효과성 분석: 경기도 안산시 청렴도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4(2): 1-24.
- 류재수. (2004). 부패방지 규범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명재진. (2007). 주민자치와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2(3): 1-20.
- 민병익·이상범. (2008).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지방정부연구. 12(3): 125-147.
- 민인식·최필선. (2012). STATA 고급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 박석범. (2004). OECD 뇌물방지협약과 이행 동향. OECD FOCUS 2004년 1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지현. (2001). OECD 뇌물방지협약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과제, 월간 KIEP 세계경제 4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재현·문상호. (2006). 부패방지법의 효과성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분석: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11(1): 71-98.
- 석호원. (2010).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183-206.
- 신동화. (1999). OECD 뇌물방지협약 발효의 의의와 시사점, 월간 KIEP 세계경제 2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성문업. (2004). OECD 뇌물방지협약과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심사 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안상욱. (2012a).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17(3): 147-165.
- \_\_\_\_\_. (2012b).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 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한국부패학회보. 17(4): 61-80.
- 오규진. (2011). OECD 뇌물방지협약과 한미의 국내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문무. (2009). 아시아 국가 반부패정책 비교: 한국의 반부패전략 개선을 중심으로. 아시아 연구. 11(3): 175-210.
- 윤충원. (2011). 미국 FCPA 반뇌물규정과 미국기업의 실무적 대응, 무역학회지. 36(2): 83-115.

- 이상환. (2007). 국제적 반부패 논의에 대한 고찰: 한·중·일의 시각 비교. *세계지역연구논총*. 25(1): 181-212 .
- 이진호. (2011). 부정부패 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주).
- 임다희·권기현. (2013). 인적자본·동기부여·교육복지 이론을 통한 교육격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순서화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1): 185-213.
- 장근호. (1999).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준오. (2002). 주요국의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실태와 문제점, OECD FOCUS.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진희·조은경. (2012).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 현황과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시사점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7(1): 25-58.
- 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전경련 연구보고서*
- 정재화. (2000). 글로벌시대의 반부패대책: OECD 부패방지협약을 중심으로. *대진논총*. 8: 107-125.
- 조은경. (2003). OECD 국가에 있어서의 부패방지정책의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춘계심포지엄 발표논문집*
- 조은경·장근호. (2000a). 세계무역장벽: 기업의 부패라운드 대처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_\_\_\_\_. (2000b). 국제부패방지대책 최근동향: OECD 부패방지협약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진종순. (2009). 여성의 공공부문 참여와 부패수준. *한국행정연구*. 18(3): 77-96.
- 진종순. (2011). 여성공무원과 정부조직의 청렴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6(3): 1-20.
- Knack, S., Young Lee and Azfar, Omar. (1999). Gender and Corrup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4: 25-55.
- Berry, France. and William Berry. (1990). State Lottery Adoption as Policy Innovations: An Event History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2): 395-415.
- Besley, T. J., and A. C. Case. (1995). Does Electoral Accountability Affect Economic Policy Choices? Evidence from Gubernatorial Term Limi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769-798.
- Brinkerhoff, Derick. W. (2000). Assessing Political Will for Anti-Corruption Efforts: An Analytic Framework.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0(3): 239-252.
- Brunetti, A, Kisunko, G and B. Weder. (1997). Economic Growth with incredible Rules :Evidence from a World Wide Private Sector Survey. *elibrary. world-bank. org*.
- Dollar, David, Raymond Fisman and Roberta Gatti. (2001). Are Women Really the “Fairer” Sex? Corruption and Women in Govern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46(4): 423-429.
- D’Souza, Anna. (2009).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Changing the Currents of Trade. *Job Market Working Paper*.

- Dye, Thomas R. (1965). Malapportionment and Public Policy in the States. *The Journal of Politics*, 27(3): 586-601.
- Eagly, A. H. and M. Crowley. (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0(3): 283-308.
- Eiginger, Peter K. (1973).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1): 11-28.
- Glover, S. H., M. A. Bumpus, J. E. Logan and J. R. Ciesla. (1997). Reexamining the Influence of Individual Values on Ethical Decision-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16(12/13): 1319-1329.
- Keohane, R. O.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nack, S. and P. Keefer.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3): 207-227.
- Kim, Bok-Tae. (2009). The Determinants of State's Decision to Join the Interstate Compacts. *한국지방정부연구*. 13(1): 217-237.
- Lippit, A. H. (2013).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Virginia Law Review*. 99: 1893-1930.
- Mauro. P.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3): 681-712.
- \_\_\_\_\_. (1997). The Effect of Corruption on Growth. *Investment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Cross-Country Analysis*. in Elliot Kimberly A. ed. *Corruption and the Global Economy*. Washington. D. 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_\_\_\_\_. (1998). Corruption and the Composition of Government Expenditur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9(2): 263-279.
- Mazmanian, Daniel A. and Paul. A. Sabatier. (1981).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Lexington, Mass: D. C. Heath and Company.
- Miller, G. J. (2000). Above Politics: Credible Commitment and Efficiency in the Design of Public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2): 289-328.
- Morgan, D. R. and M. W. Hirlinger. (1989). Socioeconomic Dimensions of the American States: An Update. *Social Science Quarterly*, 70:184-196.
- Sabatier, Paul and Mazmanian, Daniel A.. (1983). *Can Regulation Work?* New york: Plenum Press.
- Schlesinger, Joseph. (1966). *Political Ambition*. NY: Rand McNally.
- Folsom, Ralph H and Michael W. Gordon, (1995).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West Publishing Co.
- Reiss, M. C. and k. Mitra. (1998). The Effects of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on the Acceptability of Ethical and Unethical Workplace Behavior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14): 1581-1593.

- Rose-Ackerman, S. (1999). *Corruption and Government: Causes, Consequences and Reform*: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 Kpundeh, S.J. (2004). *Corruption and corruption control. Democratic Reform in Africa: The Quality of Progress* edited by Emmanuel Gyimah-Boadi. Lynne Rienner Publishers.
- Tanzi, V. and H. Davoodi. (1997). *Corruption, Public Investment and Growth*.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97/139.
- Wei, S.-J. (1997). *Why is Corruption So Much More Taxing Than Tax? Arbitrariness Kills*. NBER Working Paper.
- Zimmerman, J. F. (2002). *Interstate Cooperation: Compacts and Administrative Agreements*. West Port, CT: Prager.

---

김흥주(金興注):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2년 8월), 현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소재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규제정책, 행정윤리와 관료부패, 지방행정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규제정책 결정요인”(2013), “국가 간 반부패협약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분석”(2013),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2014) 등이다(myutos78@hanmail.net).

황광선(黃光善): 미국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The Impact of Accountability and Accountability Management on Performance, 2013년 8월),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책임성(Accountability), 정책분석, 행정관리 및 조직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Contracting in Local Public Organizations: The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2014), “Policy Design Theory: Its Utilities and Challenges”(2014), “Sustainability, New Economics, and Policy: Greening Pathway for the Auto Industry”(2014) 등이 있다(kshwang@kistep.re.kr).

Abstract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mplementation Level

Kim Heung-Ju  
Hwang Kwangseo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by participating countries is differently formulated by economic/institutional, political, societal conditions. This study selected economic/institutional, political, societal variables from the literature and explored the meaningful factors using an ordered logit. The paper shows some noticeable findings. In terms of economic/institutional aspect, the more trade scale between countries they have, the higher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anti-bribery convention they have. Also, highly developed countries show the decent level of implementation of legislation. Second, as female politicians are getting more power countries are much likely to implement the convention. Third, countries will implement the law much better when they have enough liberty of the pres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Key Words: anti-corruption,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